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331
------------	------

2025. 2. 24.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5. 1. 6. 김현기 의원 발의 (2025. 2. 6. 회부)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택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의 위촉, 제척, 회피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수정함(안 제9조제4항제1호).
- 나. 주택의 건설·공급·거래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4항제3호 가목).
- 다. 주거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4항제3호 나목).
- 라. 주택정책자문단의 위원 위촉 관련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3).

마.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법정계획 등의 심의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주택정책자문단에 대해 위촉직 위원들의 자격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밖의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주거종합계획(법정의무계획)¹⁾의 수립·변경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한 ‘주택정책자문단’을 두고 있으며, 그 구성에 관한 사

1)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9.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항은 다음 표와 같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택정책자문단 비교]

구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자문단
근거	· 주거기본법 제9조 ·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	·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제9조의3 * 조항신설 2023. 3. 27.
최초구성일	1998년 4월	2023년 12월
위원장	서울시장	부시장
정원(현원)	15명(15명) *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25명(25명) * 당연직 3명, 위촉직 22명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①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②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③ 택지개발 지구의 지정·변경·해제 ④ 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⑤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⑥ 그 밖에 주거정책 및 주택 건설·공급 등에 관한 중요한 정책²⁾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며, 위원은 주택실장 등 관계공무원 4명과 시의원 3명, 그 밖에 주거정책 대상계층의 대표자와 주거정책에 관한

2)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④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단서 생략)
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현재 15명이 위촉되어 있음(붙임 2 참조).

- **안 제9조제4항제3호**는 위원의 자격 중 ‘주거정책 전문가’를 세분화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주거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서울시 주거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규정 비교]

구 분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제9조)	
		현 행	개정안
위원장	② 시·도지사	② 서울특별시시장	② (현행과 같음)
당연직	③ 1. 관계공무원	③ 주택실장, 복지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 발전본부장	③ (현행과 같음)
위촉직		④ 1.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3명	④ 1. 서울특별시의회 - -----
	2. 주거복지 등 주거 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2. 주거복지 등 주거 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3. 주거복지 등 주거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 -----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택의 건설·공 급·거래 관련 협 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 설〉 나. 그 밖에 주거복 지 등에 관한 전 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 설〉

- 또한, 위원회가 서울시 주요 주거정책보다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에 관한 심의³⁾로 운영되고,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저조한 점(2~3회/연)⁴⁾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는 주거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주택정책자문단 관련

-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자문하기 위해⁵⁾ 설치되었는데, 당연직인 행정2부시장(위원장) 및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4) [최근 3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연도	일자	회의안건	결과
2022	4.7.	· 은평구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u>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u>	시기조정 없음
	7.27.	· 동작구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u>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u>	시기조정 없음
2023	1.25.	· 용산구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u>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u>	시기조정 없음
	12.20.	· 주거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 재계약	원안기결
2024	3.14.	·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u>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u>	원안기결
	4.24.	· 중구 신당8 재개발사업구역 <u>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u>	원안기결
	10.22.	·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안)	원안기결

- 5)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23. 3. 27.>

실장, 주택정책관과 22명의 위촉직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붙임 3 참조).

- **안 제9조의3**은 자문단의 위촉직 요건을 위원회의 위촉 요건과 동일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문단의 운영과정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고 현장 체감도를 높이려는 사항으로 이해됨.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⑦ (생략)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촉, 제척·기피·회피----- - 제9조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⑥·⑦ (현행과 같음)

- 다만, 자문단 설치 후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1 분기에 회의(4회)를 진행⁶⁾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약 1년간 운영실적이 없는바, 자문단 역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자문단 소위원회 분야: 1. 경제·사회 / 2. 주택시장 / 3. 환경·에너지·통계·정보인프라

[2024 주택정책자문단 소위원회 운영 실적]

연도	일자	상정안건	결과
2024	1.23.	· 건축주택정보화 기본계획 관련 · 주택실 건축주택정보시스템 통합관리운영	회의운영방식 및 안건확정
	1.24.	· 서울시 주택시장 및 정책 현안 토론 ·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결과 및 개선방안	서울형 가격지수 베이지안 모형 적절함
	3.15.	· 2024 서울주거포럼 주제 및 운영방향	주제 및 운영 방향 형식 제안
	3.29.	· 주택실 건축주택정보시스템 통합관리운영 · 서울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개발방향 및 기본계획 방향설정

□ 기타사항

- 그 밖에 일부 자구 수정(안 제9조제4항제1호)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안 제15조)토록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u>서울특별시의회</u> 의원 3명	제9조(구성) ④ _____. 1. _____ <u>서울특별시의회</u> _____
제1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 종합의견

- 이번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와 자문단의 위원으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술적 전문가 외에도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와 관련한 공인된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함으로써, 주택정책에의 하여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주요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정책결정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화되는 주택유형 공급 방안들을 지속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심의·자문하는 등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신아현	02-2180-8216

[붙임1] 관계법령(p.9)

[붙임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p.11)

[붙임3] 주택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p.12)

[붙임4]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실적('15~) (p.13)

□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소속	위촉기간	비 고
1	위 원 장	시 장	당연직	
2	내부위원	주택실장	"	
3	"	복지실장	"	
4	"	균형발전본부장	"	
5	"	도시공간본부장	"	
6	시 의 원	서울시의회 의원	'24. 9. 20. ~ '26. 9. 19.	
7	"	서울시의회 의원	"	
8	"	서울시의회 의원	"	
9	외부위원	대학 교수	'25. 2. 10. ~ '27. 2. 9.(연임)	
10	"	대학 교수	"	
11	"	대학 교수	"	
12	"	주택건설관련 전문가	'25. 2. 10. ~ '27. 2. 9.	
13	"	대학 교수	"	
14	"	연구원 연구위원	"	
15	"	주택건축관련 전문가	"	

붙임3
주택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소속	위촉기간	분 과
1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당연직	
2	내부위원	주택실장	"	
3	"	주택정책관	"	
4	시 의 원	서울시의회 의원	위촉직	
5	"	서울시의회 의원	위촉직	
6	"	서울시의회 의원	위촉직	
7	외부위원 (부위원장)	대학 교수	'23. 12. 15. ~ '25. 12. 14.	
8	외부위원	대학 교수	"	1. 경제, 사회
9	"	대학 조교수	"	1. 경제, 사회
10	"	대학 교수	"	1. 경제, 사회
11	"	대학 교수	"	1. 경제, 사회
12	"	대학 부교수	"	1. 경제, 사회
13	"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	1. 경제, 사회
14	"	대학 교수	"	2. 주택시장
15	"	대학 교수	"	2. 주택시장
16	"	감정평가법인 이사	"	2. 주택시장
17	"	연구원 연구위원	"	2. 주택시장
18	"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	2. 주택시장
19	"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	2. 주택시장
20	"	연구원 선임연구원	"	3. 환경,에너지, 통계, 정보인프라
21	"	대학 교수	"	3. 환경,에너지, 통계, 정보인프라
22	"	도시디자인관련 전문가	"	3. 환경,에너지, 통계, 정보인프라
23	"	연구원 본부장	"	3. 환경,에너지, 통계, 정보인프라
24	"	대학 교수	"	3. 환경,에너지, 통계, 정보인프라
25	"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	3. 환경,에너지, 통계, 정보인프라

붙임4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실적('15~)

연번	개최일자	회 의 안 건	결 과	비고
1	'15. 1. 23.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관리처분인가 심의 · 신정 2-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심의	원안가결	대면
2	'15. 3. 27.	· 이문3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심의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심의	원안가결	대면
3	'15. 5. 27.	· 신정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심의	원안가결	서면
4	'15. 6. 11.	· 거여2-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관리처분인가 심의	원안가결	대면
5	'15. 9. 10.	· 강남개포주공3, 개포시영, 강동고덕주공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관리처분인가 심의 · 강남개포주공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심의	고덕3 2개월 개포시영 3개월 기타 원안가결	대면
6	'15. 11. 27.	·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시기조정 심의 · 신정1-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원안가결	서면
7	'16. 1. 14.	·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시기조정 심의 · 갈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 장기전세주택 제도개선방안 자문	원안가결	대면 자문
8	'16. 2. 16.	· 고덕주공7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	원안가결	서면
9	'16. 5. 4.	·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	원안가결	서면
10	'16. 6. 29.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	원안가결	서면
11	'16. 12. 21.	·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 ·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	둔촌 5월 0후 권고 장위 4구역 없음	대면
12	'17. 5. 17.	·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	원안가결	서면
13	'17. 7. 17.	·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원안가결	서면
14	'17. 12. 21.	·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1차) ·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수요조사 최종보고 ·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	원안가결	서면
15	'18. 1. 8.	·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2차)	'18. 4월 이후	대면
16	'18. 2. 26.	· 잠실 미성·크로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 잠실 진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18. 7월 이후 '18. 10월 이후	대면
17	'18. 3. 6.	· 신반포3차·경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 반포주공1 1·2·4주구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18. 7.~9. '18. 9.~11. '18. 12.~19. 2. '18. 12.~19. 2.	대면
18	'19. 3. 29.	·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학술 용역 완료	원안가결	서면
19	'19. 6. 12.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원안가결	서면
20	'22. 4. 7.	· 은평구 갈현제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시기조정 없음	서면
21	'22. 7. 27.	· 동작구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시기조정 없음	서면
22	'23. 1. 25.	· 용산구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시기조정 없음	서면
23	'23. 12. 20.	· 주거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 재계약	원안가결	서면
24	'24. 3. 14.	·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원안가결	서면
25	'24. 4. 24.	· 중구 신당8 재개발사업구역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	원안가결	서면
26	'24. 10. 22.	·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안)	원안가결	대면